

제 1595 호

1991. 9.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전
전 화 : 731-6111~3
인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6111~3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3
◎ 규 칙		
제 2429 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증개정규칙	3
제 2430 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4
제 2431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증개정규칙	4
◎ 교육위원회규칙		
제 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	6
제 3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	9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 울 특 별 시

“열매맺는 북방의 교” 다가서는 행화통일”

● 고 시

제 27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0
제 275 호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안)	11

● 건설부고시

제 512 호 서울대방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1
제 516 호 서울월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2

● 구 고 시

제 16 호 도시계획지역(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작고시(용산)	13
제 22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허가(동작)	14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	14
제 2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관악)	21
제 2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서)	21
제 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21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23
제 4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증정정고시(도봉)	24

● 구 공 고

제 98 호 주택개량재개발시흥제2-1구역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구로)	25
제 145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25

● 사업소고시

제 47 호 하천점용허가	26
제 48 호 하천점용허가	26

● 사 령

● 공지사항	29
--------	-------	----

공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수원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

16조에 의거 전환조회를 하오니 필요한 부서에서는 91.10.10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요청이 없을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1991. 9. 16

구의수원지사무소장

- 아 래 -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회 계	제작회사	제작연도	비고
6120-013	변압기	1φ 22.9/3.3KV 3000KVA	3대	수도특별국재전기	73.3	요정비	
	"	1φ 3300/105V 50KVA	1대	제일전기	82.12	"	
6105-028	모터	3φ 3300V 6P 600HP	4대	한영	66:1 69:1 74:1 76:1	"	
	"	3φ 3300V 10P 500HP	3대	"	76:1대 74:2대	"	
4320-042	펌프	600/500 600HP 37㎥/분 52m	6대	"	63:3 72:2 78:1	"	
	"	500/450 500HP 21㎥/분	4대	"	74:2 76:2	"	

규 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9. 16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⑬

⑤ 서울특별시규칙제2429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도특별회계-상하수국장)", "(수도특별회계-업무과장)", "(수도특별회계-경리계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소속행정기관(시립대학교를 포함한다)

징수관-기관장(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경리관-기관장

분임경리관-총무부장, 서무과장

채권관리관-기관장

분임채권관리관-각실과장

채무관리관-기관장

분임채무관리관-각실과장

지출원-경리과장(교육원 경리계장)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서무과장(시립대학교 총무과장, 교육원 서무계장)

일시전도자금출납원-기관의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부 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9. 16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⑬

◎서울특별시규칙제2430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증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도특별회계-업무파장”을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급소속행정기관(시립대학교를 포함한다)

물품관리관: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광무

원교육원-서무과장-시립대학

교-사무국장

분임물품관리관:종합건설본부-각부장, 광

무원교육원-각실과장, 시립대학

교-각대학장(처장 및 대학

원장을 포함한다)

물품출납원:종합건설본부, 시립대학교-경

리과장, 광무원교육원-서무계

장

분임물품출납원:종합건설본부-총무부는

각과 주무부장 타부는 물품담당

당공무원(5급) 다만 공사자

재에 한하여 각부 공사담당

5급공무원

공무원교육원:각실과 주무부장

시립대학교:각실과 소의장 또는 과장

부
처
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증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9. 16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⑧

◎서울특별시규칙제2431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찰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공무원의 승급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인사통계보고) 인사담당관은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4항 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특수한 직무분야, 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사무보조직렬의 집배직류 공무원

3. 방호직렬 공무원

제62조제2항 중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를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 중 “0.2점”을 “0.1점”으로 한다.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별표 2〉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	
〈별표 3〉 연구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의 학예연구직렬의 연구관·연구사관 중 “고고인류학”을 “국문학, 고고인류학”으로 하고, 보건연구직렬 중			환경연구직렬란을 삭제하며, 보건연구직렬란 다음에 환경연구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연구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생물학 또는 해양계학의 학과를 이수한 자	
〈별표 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전직시험 응시자격증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 구분표			증 사서직렬란 앞에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별표 8〉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이외의 기술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 1.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직렬란 중 “토목”을 “토목, 수도토목”으로 하고, 직렬란 중 “일반토목”을 “일반토목·수도토목”으로 하며, 건축직렬의 5급 이상란 중 “건축기술사”를 “건축사, 건			축기술사”로 한다.	
〈별표 11〉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의 사무보조 직렬란 중 전산직류를 삭제하고 노·립직렬의 농림원예직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며 사무보조직렬 다음에 전산직렬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산	전산	전자계산기능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계산기기능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2급	자료입력기능사 보
〈추가〉				
농림 원예		화훼재배기능사 1급	화훼재배기능사 2급	화훼재배기능사 보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중			농림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 림	농업	농업, 임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임업	임업		
	축 산	축산		

(별표 13)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 특별 임용예정직급 및 전공학과 구분표 중 보건		연구직렬 다음에 별정직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정직	7급 상당	산업미술학과, 환경조각학과
(별표 21)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의 1급		란을 삭제하고 2급의 연구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급	(별표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등급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증전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중 참고란의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록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 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③청원서에는 소개한 위원의 소개의견서 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첨 부한다.</p> <p>④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3인 이상의 대 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위원회의 의장(이 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①의장은 청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위원과 청원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판에 간접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p>②청원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p>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규칙제2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위원회에 청원을 하거나 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p>위원을 경유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장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p> <p>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써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p> <p>③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위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p> <p>④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소개위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위원은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제7조(청원인 등 진술) ①소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제출과 회피) ①위원회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한다.</p>	<p>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p> <p>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9조(심사보고) 소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위원회에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2.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p>제10조(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치하였거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p>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p> <p>②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원접수 및 소위원회에의 회부
---	--

2.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때
3.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4.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3조(청원의 철회 등) ①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위원이 서명捺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위원이 서명·捺인한다.

②청원은 그 청원을 소개한 위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위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교육자체에 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62조 준용)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록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원 전명	
청원인	주 소 성 명
소개교육위원	주민등록번호
소개 연월일	
소 개 의 견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 전명	
청원인	주 소 성 명
소개교육위원	주민등록번호
청원 제출일자	청원 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제 1595 호

시

보

1991. 9.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서울
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1991.9.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규칙제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
송·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
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관리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규격) ①위원회에서 사용하
는 관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장의 인

②관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규격은 별
표와 같다.

③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
로로 새긴다.

제3조(작인) 위원회에서 판서명과 직명에
'인'자를 붙여 새긴다.

제4조(용도)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인

가. 위원회에서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
나. 위원회 의결문서의 교육청으로의 이
송

다. 기타 위원회를 대표하는 인증문서

제5조(교부·등록 및 관리) ①관인은 의사
담당관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
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인은 의사담당관실 주무제장이 편리
한다.

제6조(재교부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
는 파손되거나 기타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의사담당관에게
재교부 요청한다.

②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사담당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
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인대장은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관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
기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 또는 위
위원회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수방법) 관인은 접두 이외의 시간
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인의 날인) ①관인의 날인은 관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
야 한다.

②관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관
인의 가운데 오도록 짹어야 한다.

③관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거나 인쇄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인관수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인의 사고 보고) 관인의 관수자
는 관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담당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관인의 규격

구 분	규 格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인	2.7cm	교육감 관인과 동일

(별지 제:1 호서식)

관 인 대 정

인 영

동	목	년	월	일	검	인	
새	긴	날	년	월	폐	기 한	년 월 일
새	긴	사	람		폐	기 사	유
재	료				인	영	의 상
적	요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7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성동구고시 제48호(90.12.29)로 지적승인된 "동부도시고속도로(장안교~용비교)건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서울시공고 제207호(91.7.10)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토목1부) 및 구로구청(건설관리과), 중랑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9.1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중랑구 면목동 727-26(장안교)~성동구 성수동 685(용비교)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동부도시고속도로(장안교~용비교)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종합건설본부장)

라. 사업개요: 도로 폭=15m×2열,

연장=7,200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92.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서울특별시장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m ²)	면적 면적 (m ²)	면적 면적 (m ²)	설계 상황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성동구 농동	2-14	대	1,052.6	4.4		동양가스	관악 신림 연료 112-46		
2	"	92-65	대	68.8	8.7		이 청자	강남 미천 82-14		
3	송정동	73-1022	천	426.0	297.0		김 성균	송정동 72		
4	"	73-196	천	110.0	94.5		김 성균	송정동 72		
5	"	73-5	천	1,167.0	21.0		표 경덕	송정동 72		
6	"	72-65	천	73.0	71.5		김봉완	송정동 72		
7	"	73-246	천	106.0	48.0		표 경덕	송정동 72		
8	"	73-244	천	268.0	260.0		박 춘복	송정동 72		

◎서울특별시고시제275호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중 온수수영장 사용료를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사용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1991.9.16

서울특별시장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

시설명	사용구분	사용료
온수수영장	어른 1회	2,000원
	청소년 1회	1,500원

건설부고시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서류 사본은 서울특별시청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1.9.16

건설부장관

◎건설부고시제512호

서울대방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대방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

1. 사업인정조서(변경)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당초	영구임대 주택건설	대한주택 공사사장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15 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53,078㎡ (사업면적: 62,916㎡) - 91사업: 32,183㎡ (대지면적: 22,345㎡) - 차기사업: 30,733㎡ (대지면적: 30,733㎡) • 건축연면적: 45,038.62㎡ • 건설호수: 영구임대 아파트 9동 925호 	65,166,666 천 원	91.5~93.10
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52,620㎡ (사업면적: 62,916㎡) - 91사업: 32,256㎡ (대지면적: 21,960㎡) - 차기사업: 30,660㎡ (대지면적: 30,660㎡) • 건축연면적: 45,053.94㎡ • 건설호수: 영구임대 아파트 9동 925호 	"	"

◎건설부고시제516호

서울월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월계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축진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

관계서류 사본은 서울특별시청과 대한주
택공사 서울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91.9.16

건설부장관

○ 사업인정조서(변경)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천 원)	사업기간
당초	90영구임 대, 분양, 사원용 임 대 및 91 장기임대 주택건설	대한주택 공사사장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00번 지 일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영구임대 - 대지면적: 49,280㎡ - 건축연면적: 100,725.75㎡ - 건설호수: 8동 2,298호 2.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분양 - 대지면적: 25,543㎡ - 건축연면적: 59,778.46㎡ 	63,814,767 34,527,529 (국민주택자금: 4,720,000)	90.10~92.12 90.10~92.12

30--12

4229

제 1595 호

시
보

1991. 9. 16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천 원)	사업기간
				- 건설호수: 7동 652호 ○ 90사원용 임대 - 대지면적: 15,153㎡ - 건축연면적: 31,158.96㎡ - 건설호수: 3동 540호 ○ 91장기임대 • 대지면적: 13,430㎡ • 건축연면적: 30,909.97㎡ • 건설호수: 4동 540호	19,435,832 (국민주택자금: 6,480,000)	90.10~92.12

구 고 시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전화: 710-3385).

1991.9.16

용산구청장

◎ 용산구고시제16호

도시계획지역(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91.8.8)로 도시계획 지역(용도지역)변경 결정사항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91.8.20)로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지역(용도지역)지적고시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지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294,133,647.9	(감) 3,687	294,129,961	여객정류장(전세버스)
일반상업지역	21,639,243	(증) 3,687	21,642,930	스) 추가지정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고시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 정	여객자동차정류장(전세버스)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14,889	(증) 3,687㎡
변 경	버스정류장(전세버스)		18,576	

○ 도면 생략

◎동작구고시제22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772호(87.11.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동작구고시 제3호(88.2.5)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산업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9.16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동작구 사당동 136-1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시계획사업
(사당풀라자)

다.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3,518m²

○ 건축면적

· 당초:1,705.25m²

· 변경:1,735.71m²

○ 연면적(지하 2층, 지상 8층)

· 당초:14,794.31m²

· 변경:14,752.52m²

라. 사업시행자:동작구 사당동 136-1 경
유산업(주) 오준경

마. 사업의 준공예정일

○ 당초:91.12.31

○ 변경:92.9.30

바.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별첨(생략)

사. 위치도 및 평면도:별첨(생략)

◎관악구고시제24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고시

1. 전설부고시 제145호(78.6.15)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5호(79.7.3)로 지역승인된 도시계획도로(관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9.16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관악로(봉천고개~봉천시
장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시계획사업
(관악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확장 B=20~40m,
L=500m

라. 사업시행자: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70-1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시행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1992.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
명세:별첨

사. 토지(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아. 시행인가 설계도서:별첨(계획 생략)

토지조사서

사업시행자명 : 관악구청

사업시행자 주소 : 관악구 봉천동 1570-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관악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봉천동 1-948	임	43	43	이 은 선	봉천동 181-6 낙성대 현대④ 101-806	현대건설 (주)	중로구 계동 140-2	근처당설정		
2	1-1455	대	56	56	노 상 훈	봉천동 산 89-11					
3	1-1456	대	85	85	"	"	봉 천 3 동 세마을금고	봉천동 14-4	근처당설정	1-311	
4	1-1457	대	60	60	주 시 주	봉천동 7-187					1-455
5	1-456	대	17	17	김 두 식	봉천동 산 91					
6	7-455	대	152	152	이 원 슬	영등포구 신길동 233-31	정 풍 물 산 (주)	마아동 734-19	근처당설정	7-409	
7	7-456	대	2	2	민 병 국	구로구 식흥동 851-17					7-184
8	7-193	대	43	43	"	"					7-192
9	7-44	답	20	20	장 인 안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⑤ 8-509					
10	7-446	답	136	136	장 신 원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⑥ 101-201					
11	7-444	대	131	131	장 신 재	"					
					장 인 악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판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회 권 리종류 및 내용	
12	봉천동 7-447	담	12	12		김 경숙	강남구 반포동 1271 반포④ 88-102				
13	7-448	담	97	97		장 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1-201				
14	7-45	담	30	30		장 신원	"				
15	7-248	담	36	36		장 신재	"				
						장 인안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④ 8-509				
16	7-451	잡	5	5		"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1-201				
17	7-457	잡	81	81		김태관	중구 필동 84-47				
						조상준	봉천동 1613-14				
						김태공	중구 필동2가 84-47				
18	7-458	잡	23	23		이창국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127-1				
						임창호	동작구 상도동 134-214				
19	1-1458	대	65	65		김성학	동작구 상도동 1-490	정 풍 물 산 (주)	도봉구 미아동 734-19	근저당설정	1-184 1-490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명 : 관악구청

사업시행자 주소 : 관악구 봉천동 1570-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관악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판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회권리의종류및내용	
1	봉천동 1-1455	건 물		16㎡	주 거 용	노상훈	봉천동 산89-11				1-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격	수량	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판 재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455	봉천동 1-1455	대 문 수도계량기 정화조 담수 부속 건물 건수도계량기 담대장문	문 1개 1개 1개 1식 59주 2m ² 93m ²	1개 1개 1개 1식 59주 2m ² 93m ²	주 거 용 화장실 공장 및 주거	노상훈 노상훈	봉천동 산89-11 봉천동 89-11				1-57
2	1-1456	"	"	1개 1식 1개 5m ² 3m ²							1-311
3	1-1457	부속 건물 정화조 담대장문 수대문 진부속건물 부대담수 진상화조	문 1개 1식 1개 17주 29m ² 1식 1개 1식 11주 33m ² 1개 1식 1개 1주		장독대 화장실	주 시 주	봉천동 7-187				1-455 7-187
4	1-1458	"	"	1개 1식 1개 17주 29m ² 1식 1개 1식 11주 33m ² 1개 1식 1개 1주	주 거 용 장독대	김성학	봉천동 1-490				
5	7-455	"	"			이원술	영동포구 신길동 233-31				7-4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격	수 양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판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봉천동 7-193	건 물 수 담 도 대 장 장		62㎡	주 거 용	민 병 국	구로구 시흥동 851-17				
7	봉천동 7					심 순 회	봉천동 7 신원빌라 1-101			1-101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1-102	
						현대Ⓐ	101-201				
						정 상 조	봉천동 7 신원빌라 1-103			1-103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1-104	
						현대Ⓐ	101-201				
						장 인 안	"			1-105	
						장 인 안	"			1-106	
						장 인 안	"			1-107	
						천 복 수	마산시 화원구 양덕동 95-21 태양Ⓐ 209			1-108	
						유 병 순	봉천동 7 신원빌라 1-109			1-109	
						김 철 원	봉천동 7 신원빌라 1-110			1-110	
						박 옥 윤	봉천동 7 신월빌라 1-111			1-111	
						최 완 순	봉천동 7 신월빌라 1-112			1-112	
						김 경 중	봉천동 7 신월빌라 1-201			1-201	
						박 덕 숙	용산구 한강로2가 2-190			1-202	
						신 귀 윤	봉천동 7 신월빌라 1-203			1-203	
						윤 순 각	봉천동 7 신월빌라 1-204			1-204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1-205	
						현대Ⓐ	101-201				
						박 정 화	봉천동 7 신월빌라 1-206			1-206	

4232

1991.9.16

1991.9.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7	봉천동 7	담 장		1식		박 정 용	봉천동 7 신원빌라 1-207			1-207	
						윤 경 주	봉천동 7 신원빌라 1-208			1-208	
						이 귀 송	봉천동 7 신원빌라 1-209			1-209	
						고 미 향	봉천동 7 신원빌라 1-210			1-210	
						김 길 천	봉천동 7 신원빌라 1-211			1-211	
						김 금 선	봉천동 7 신원빌라 1-212			1-212	
						이 명 훈	봉천동 7 신원빌라 1-301			1-301	
						이 영	봉천동 66-141			1-302	
						안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3			1-303	
						박	봉천동 7 신원빌라 1-304			1-304	
						정	봉천동 7 신원빌라 1-305			1-305	
						정	봉천동 7 신원빌라 1-306			1-306	
						김	봉천동 7 신원빌라 1-307			1-307	
						장	봉천동 7 신원빌라 1-308			1-308	
						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9			1-309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1-310	
						현대(A)	101-201				
						김 수 강	봉천동 7 신원빌라 1-311			1-311	
						정 경 자	봉천동 7 신원빌라 1-312			1-312	
						파 맹 두	봉천동 7 신원빌라 2-101			2-101	
						정 현 수	봉천동 7 신원빌라 2-102			2-102	
						노 권 길	봉천동 7 신원빌라 2-103			2-103	
						장	강남구 개포동 826-39			2-104	
						인	현대(A) 101-201				
						안	"			2-105	
						인	"			2-1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판매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의권의종류및내용	
7	봉천동 7	담장		1식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2-107
						현대Ⓐ	101-201				2-108
						강인안	"				
						박병호	봉천동 7 신원빌라 2-201				2-201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2-202
						현대Ⓐ	101-201				
						서병옥	봉천동 7 신원빌라 2-203				2-203
						이봉섭	봉천동 7 신원빌라 2-204				2-204
						김근수	봉천동 7 신원빌라 2-205				2-205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2-206
						현대Ⓐ	101-201				
						윤문호	봉천동 98-4				2-207
						김형석	성북구 하월곡동 83-58				2-208
						박희배	봉천동 7 신원빌라 2-301				2-301
						박병운	봉천동 7 신원빌라 2-302				2-302
						서근화	봉천동 7 신원빌라 2-303				2-303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2-304
						현대Ⓐ	101-201				
						강인안	"				2-305
						강인안	"				2-306
						강인안	"				2-307
						이선주	봉천동 7 신원빌라 2-308				2-308

◎관악구고시제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51호(91.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내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9. 16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신	설	소	로			(m)	(m)				
신	설	소	로	1		10	220	관악구	봉천동 270-12	관악구	봉천동 196-3
"	"	"	"	2		8	83	"	196-227	"	산 59-1
"	"	"	"	3		6	180	"	213-18	"	207-6
"	"	"	"	3		6	210	"	215-3	"	196-132
"	"	"	"	3		6	80	"	산 59-1	"	196-136
"	"	"	"	2		8	95	"	738-17	"	222-3
"	"	"	"	3		6	176	"	738-17	"	196-299
"	"	"	"	1		10	80	"	296	"	300-1

나. 도면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의 배치도면과 같음(생략).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24-13

○ 대지면적 : 1,842.60㎡

○ 사업규모 : 아파트 5층 1동 40세대
라. 사업시행기간 : 1991.9.~1992.7.30

◎강서구고시제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한일연립재건축조합 대표자 유관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 측면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9. 16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명 : 한일연립 재건축 조합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성명 : 한일연립 재건축조합 대표자
유관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10-1

○ 공사시공자 : 유정건설(주) 이상호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31-14

다. 사업시행자

◎은평구고시제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10.24)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고시 제7호(91.3.23)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38~39 도로개설공사 구간인 대조동 42-5~59-12간 도로에 대한 은평구고시 제11호(91.4.26) 인가고시한 바 있으나 물건조사중 소유자 및 관계인, 건물 지장률이 누락되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변경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9. 16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은평구 대조동 42-5 ~59-12	설명 : 별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대조동 38~39간 도로개설공사	아. 보상계획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개설 B=6m, L=90m	1) 보상시기 : 91. 5.부터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2)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의취득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91.12.31	○ 보상지급방법 토지 : 계약과 동시에 보상금 전액 지급 건물 : 계약과 동시에 70% 지급, 철 거후 잔액지급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 서 : 별첨	3) 협의 불용시 토지수용법 제25조제 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목록과 소유자 및 관계인

○ 토지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m ²)	수용면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대조동 42-11	대	1	1	대조동 42-5	김 기식	서초구 반포동 723-23	주식회사 한성상호 신용금고 (소공동지점)	근저당권
2	* 42-9	*	68	68	파천시 부림동 오세희 주공⑧711-504				
3	* 38-53	*	9	9	대조동 38-16	태 용 원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0-14	길상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4	* 43-10	*	15	15	* 43-2	남 판 우			
5	* 43-9	*	2	2	녹번동 128-3	이 민 식			

수용할 토지·물건의 목록과 소유자 관계인

○ 건물(지장물, 기타)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구 적	용도	총면적 (수평)	수용면적 (수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대조동 42-5	건 물			29평	대조동 42-5	김 기식	서초구 반포동 723-23	주식회사 한성상호 신용금고	근저당권	
2	42-6	건 물 부 임 장			29평 14평 7.2x1.9m	파천시 부림동 주 공⑧711-504	오세희				

제 1595 호

시

보

1991. 9. 16

임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별 구 력	용 도	총면적 (수평)	수용면적 (수평)	소 용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	대조동 42-6	담 장 장 미 라 일 탁 화 양 목 사 철			7.8x1.4m	1주 1주 2주 1주					
3	38-16	소 대 문 담 장			1식 4.6x1.9m	대조동 38-16	대 용 원	경기도 강화군 길 상면 은수리 510- 협동조합 14	근 저 담 헌		
4	43-4	담 장 장 독 대			6x2m 1식	동작구 흑석동 223-24	임 기 원				
5	59-12	대 문 담 장 라 일 라 사 철 향 나 무 정 원 석			1식 3.8x1.8m 1주 1주 1주 1식	대조동 59-12	유 광 택				
6	41-3	대 문 대문(소) 담 장 정 화 조			1식 9.0x1.8m 1식	대조동 41-3	권 김 전				

◎성북구고시제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호(91.7.25)
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하고 성북구고시 제25호(91.8.10)로 변경
인가고시한 "종암동 57~78 도로개설공
사"의 일부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9. 16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내용

구 分	당 초	변 경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91. 12. 31
나. 토지조사 삽제본 : 따로 불임. 다. 기타사항은 변경 없음.		불임 : 토지조사제조서 1부

보지조서

사업시행자명: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사업회 종류: 종암동 57~78도로개설공사

의뢰부서: 성북구 토목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설체이 용상황	소유자		판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종암동 125-206	대	5	5		대한주 택공사	강남구 논현동 254			삭제
2	125-208	"	2	2		"	"			"
3	산2-127	임	19	19		국 (재무부)				"
4	산2-128	"	8	8		"				"

◎도봉구고시제4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다.

1991. 9. 16

인가증정정고시
시보 제1550호(91.3.15)에 개재된 도봉구
고시 제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도봉구 청장

1. 사업명칭: 수유2동 535 주변 도로개설공사

2. 정정내용

구분	오				정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토지 조사	수유동	대	172	수유동 535-18 김지호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535-297							
	535-295	"	54	강동구 기락동 142-1 미성2-1101 최무용	"	"	"	"
	535-275	"	1	수유동 535-50 지명학	"	"	"	"
	535-277	"	14	구로구 시흥동 1002-1,2 럭키④ 6-801 이덕규	"	"	"	"
	535-278	"	45	" "	"	"	"	"
	535-279	"	60	수유동 535-46 이동선	"	"	"	"
	535-256	도로	45	수유동 535-39 권오감	수유동	대	246	동대문구 상봉동 108-6 (주)한전주택
					535-390			

구분	오				전			
	물건의 소재지 종 류 유 규 격	구조 및 수량	소유자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지장물 조 서		수유동 535-39		수유동	지 하 대 피 담 나 부	시멘트돌 시멘트 시멘트 5.58m ² 16.2m ² 5주	6.58m ²	수유동 535-39 권오갑

구 공 고

◎구로구공고제98호

주택개량재개발시흥제2-1구역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4호(89.9.30)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 재개발 시흥제2-1구역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와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주택개량재개발 시흥제 2-1구역 안의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기타 당해 구역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1. 9. 16

구로구청장

공람공고내용

가. 공람기간 : 1991.9.18 ~ 1991.10.12(30일간)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시흥제2-1구역조합 사무소

다. 의견서제출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및 시흥제2-1구역 조합설립위원회사무소
 라. 민가신청의 요지

- 1) 사업명칭 : 시흥제2-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100-1번지 외 342필지
- 3) 시행면적 : 100,707m²
- 4) 시행기간 : 민가일로부터 28개월
- 5) 신청인 : 시흥제2-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위원회 위원장 송재영
- 6) 시행계획 : 정관 및 설계도서 생략
 주택건립규모 : 아파트 18,20층 17동
 평형별 가구수 12평형 564세대
 23평형 328세대
 33평형 616세대
 44평형 828세대

◎중구공고제14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기 공고합니다.

1991. 9. 16

중구청장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내역

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인가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설비공사업(서울 12-71) 대한화 사 산 업 (주)	이수엽	서울 중구 월동 1가 43-1	(주) 운경노 중원	경남 울산시 남구 산정동 255-3	91. 9.		

사업소고시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1. 9. 11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47호

하천점용허가

허가 연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1.9.11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이촌고 수부지 동작대 교 일	하천	44㎡ (22㎡×2동)	이동식 컨테이 너 설치	1991.9.12 ~ 1992.4.20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542-8	대흥기업사 대표 정대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1. 9. 9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1.9.10	서울특별시 영 동포구 여의도 동 85-1번지선 한강	하천	1,387㎡ (노들나루)	유 선 장	91.9.11 ~92.9.10	인천시 북구 설정동 588-10	(주) 세모 박상복
"	"	"	1,142㎡	유 선 장 (진성호)	"	"	"
"	서울특별시 송 파구 감실동 19번지선 한강	"	1,609㎡	유 선 장 (누에나루)	"	"	"
"	"	"	790㎡	유 선 장 (유전호)	"	"	"

사령

5급행정직 공무원 의원면직

◎1991년 9월 5일자

영 제32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상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기능직공무원 전보 및 파견

◎1991년 9월 14일자

영 제3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애심	청소년과에 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사무보조관 (타자) 10종	
김형숙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5조정관실 파견근무 (91. 9. 14 ~ 10. 15까지 새질서생생활실천법국민대회 준비 요원)	청소년과 "	

지방별정책 5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9월 13일자

영 제3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영철	지방별정책 5급상당(부의장비서관)	신규임용	
	시의회사무국		

지방별정책 공무원 의원면직

◎1991년 9월 13일자

영 제33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태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청소년직업훈련원	지방별정책 7급상당
김문심	"	서울지방건설청	지방별정책 9급상당

6급지방공무원 전입

◎1991년 9월 16일자

영 제3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성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법무담당관 근무를 명함.	강원도	지방행정주사

5급공무원 파견

◎1991년 9월 14일자

영 제334호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정효성	국무총리행정조정실(새질서재생활 법국민대회 상황실) 파견 (91. 9.14~91.10.15)	내무부	국지방행정사무관

7급이하 공무원 파견

◎1991년 9월 16일자

영 제335호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유광열	공무원교육원(전산교관요원) 파견 근무 (91. 9.16~91.12.31)	전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7급이하 공무원 전보 및 인사교류

◎1991년 9월 16일자

영 제336호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이우명	송파구 전출	운수2과	지방행정주사
이한식	종로구 전출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공무 국외여행 명령사항

◎1991년 9월 11일자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문화관광국 국제교류파 주사보	부이사관 지방행정 주사보	김명주 임선식	말레이시아	91.9.15 ~9.21 (7일간)	시비(국외 여비규정 에의함)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시정회의(PACOM) 에 서울시 대표로 참 석
행정과	행정7급	류희동	일본, 대만, 홍콩	91.9.28 ~10.4 (8일간)	시비(국외 여비규정 에의함)	친절향상을 위한 외 국외 민원제도 등의 비교시찰 및 자료수 집
	행정6급	이홍상	일본, 대만, 싱가포르	91.10.5 ~10.12 (8일간)		
	행정7급	송영주	"	91.10.12 ~10.18 (7일간)		

제 1595 호

시

보

1991. 9. 16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행정과	행정 5급	김찬곤	일본, 대만, 싱가포르	91.10.19 ~10.26 (8일간)	시비(국외 여비 규정 에 의함)	친절항상을 위한 외 국의 민원제도 등의 비교사찰 및 자료수 집
	행정 6급	이인배	"	91.10.26 ~11.1 (7일간)		
	행정 7급	정선우	"	91.11.2 ~11.9 (8일간)		
시민과	행정 5급	정태산	일본, 탈레	91.10.2	시비(국외 여비 규정 에 의함)	창구 민원행정과 보 존문서 관리제도 및 시설 비교연구, 시종 합문서고 운영에 활 용
	행정 6급	박근	이시아, 싱 가포르	~10.11 (10일간)		
문화과	지방전문 "라"급	황성옥	일본	91.10.22 ~11.3 (13일간)	초청 단체 부담	"유네스코" 아시아문 화센터 주관, 박물관 ·미술관의 문화예술 전통에 관한 세미나 참석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이석영	일본	91.9.26 ~10.2 (7일간)	시비(국외 여비 규정 에 의함)	영농지도자의 해외연 수단 연출

공무 국외여행 명령사항

◎1991년 9월 14일자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도시계획과	시설기정	장석효	미국, 일본	91.9.25	시비(국외 여비 규정 에 의함)	외국 대도시 도시재 획 운용실태 조사
	토목기사보	박영칠	프랑스, 영 국, 독일	~10.6 (12일간)		

공지사항

소방지령전산화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서제출안내공고서울특별시소방본부 소방지령전산화 기본
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명: 소방지령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수보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활동 완료 후 귀서(소)까지의 소방지령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 유·무선통신과 연계처리되는 소방지령 전산화 시스템 구축계획 ○ 소방지령 전산화 D/B 구축계획 ○ 서울특별시 지도 D/B 구축계획 <p>3. 제안서제출 대상업체 자격 다음 각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하며 공동참여도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술용역유성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용역업체 나. 기술용역유성법시행령 제5조와 규정에 의거 정보처리 및 전기통신 전문분야에 등록된 업체 다. 기술용역유성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업체 <p>4. 제안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안참가 안내서 교부 및 제안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9월19일~9월26일 18:00 ○ 제안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10월5일 18:00 ○ 제안서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소방전산추진반 <p>5.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 안내서,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소방전산 추진반에서 교부합니다. 나. 사업수행 제안서, 과업지시서 수령 및 등록시는 업체의 대표가 직접 참가(인장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범인의 경우 등기부상 등기된 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용역파업 수행능력 평가방법에 의해 심사, 우수업체를 선정 경쟁입찰합니다. 	<p>마. 제안서 제출참가자는 등록 및 제안서 제출전 반드시 당 본부에 비치된 제안 유의사항 및 제안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p> <p>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본부 전산추진반(733-1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9. 16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p>
---	--